

## 수 원 지 방 법 원

### 판 결

사 건 2011고단2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흥기등상해)  
피 고 인 이○○○ (86년생, 여), 식당 운영  
주거 수원시  
등록기준지 대구  
검 사 강용묵  
변 호 인 변호사 박ㄱㄱ(국선)  
판 결 선 고 2011. 9. 1.

#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2011. 4. 24. 02: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"나이트클럽"에서, 피해자 김○○ (여, 19세)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동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,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(굽높이 12cm, 넓이 1cm)를 벗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"야 미친년아"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구

두 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, 피해자가 왼손으로 얼굴을 막자 다시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1회 내리찍고,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쫓아 가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뒷머리, 어깨, 가슴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지골 골절 및 열상, 다발성 두피열상, 안면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.

## 증거의 요지

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김⊙⊙, 김★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
### 1. 상해진단서

1. 하이힐 구두 사진, 피해자의 얼굴 사진, 범행현장 사진

## 법령의 적용

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, 제2조 제1항 제3호, 형법 제257조 제1항

### 1. 작량감경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(초범, 우발적 범행,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, 반성하는 점 등 참작)

### 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(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)

판사 이준철 \_\_\_\_\_